

#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요약

- 연말정산 시기 : 계속근무자 ⇨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(소득세법§134, §135 원천징수시기 특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신고납부)  
※ 2020. 3.10.까지 연말정산 신고 및 환급신청 (반기 납 신고자도 가능)
-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: 근로·사업·퇴직소득, 종교인소득(3월10일), 그 외 (2월 말일)

(연간근로소득-비과세소득)  
= 총 급여액

- 근로소득공제

(총급여액-근로소득공제)  
= 근로소득금액

- 인적공제

- 연금보험료공제

- 특별소득공제

- 그 밖의 소득공제

= 과세표준

× 기본세율 (6~42%)

= 산출세액
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         | 총급여액의 70%                |
| 500만원 초과 ~ 1,500만원 이하   | 350만원 + 500만원초과액의 40%    |
| 1,500만원 초과 ~ 4,500만원 이하 | 750만원 + 1,500만원초과액의 15%  |
| 4,500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     | 1,200만원 + 4,500만원초과액의 5% |
| 1억원 초과                  | 1,475만원 + 1억원초과액의 2%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기본공제<br>(본인·배우자·부양가족 등)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근로자본인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,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</li> <li>직계존속 : 만 60세 이상(1959.12.31.이전 생)</li> <li>직계비속·동거입양자 : 만 20세 이하(1999.1.1.이후 생)</li> <li>형제자매 : 만 20세 이하, 만 60세 이상</li> </ul>   |
| 추가공제<br>(경로·장애인·부녀자·한부모)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로우대 공제 : 만 70세 이상(1949.12.31.이전 생) 1인당 100만원</li> <li>장애인 공제 : 1인당 200만원</li> <li>부녀자 공제 : 50만원(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)</li> <li>한부모 공제 : 100만원(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우선적용)</li> </ul>   |
| 연금보험료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민·공무원·군인·사립학교교직원·별정우체국연금 : 본인 부담액 공제</li> </ul>   |
| 보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민건강보험료·고용보험료·노인장기요양보험료 : 본인 부담액 전액공제</li> <li>①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②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③주택마련저축납입액</li> <li>한도 : ①+② = 300만원</li> <li>①+②+③ = 1800만원 · 1500만원 · 500만원 · 300만원</li> <li>① 상환기간 및 방식에 따라 한도 차등 적용, ※ 뒷면 참조</li> </ul>  |
| 주택자금<br>공제산식 : (㉠×40%) + ㉡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개인연금저축 : (2000.12.31.이전 가입) 공제액 : 연간납입금액의 40% (한도 : 72만원)</li> <li>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 : 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(한도 : 500만원·300만원·200만원)<br/>총 급여 7천 이하 법인대표자 가입 및 공제가능(2016년 이후 가입분)</li> <li>주택마련저축 : 청약저축·주택청약종합저축(年 240만원 이하), 근로자주택마련저축(月 15만원 이하)<br/>공제액 : 납입금액의 40%(한도 : 상기 주택자금공제 한도 참조) *총급여 7천만원 이하</li> <li>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: 투자액의 10%를 투자일로부터 2년내 과세기간 선택 공제(한도 : 종합소득금액 50%)<br/>벤처기업 직접투자액 3천만원 이하 100%,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70%, 5천만원 초과 30%</li> <li>신용카드 : 일반 : 15% · 전통시장 · 대중교통 : 40%<br/>현금영수증 · 직불카드,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 사용분 : 30%<br/>* 박물관·미술관 사용분 : '19.7.1. 이후 사용분부터 공제</li> <li>우리사주조합 출연금 :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액(한도 : 400만원, 벤처 1,500만원)</li> <li>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: 임금삭감액(직전 임금총액-당해 임금총액)의 50%공제 (한도 : 1,000만원)</li> <li>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: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%공제(한도 : 240만원)</li> </ul> |
| 조세조약상 감면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원어민교사, 조세조약상 면세요건 충족 시 면세 혜택</li> <li>중소기업취업자 감면 (청년 90%, 청년 외 70%) : 대상 : 청년(만 15세~34세), 청년 외(60세 이상자, 장애인, 동일직장채취업한 경력단절여성)</li> <li>외국인 기술자 감면 :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2년내(50% 세액감면)</li> <li>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감면 :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중 기업기여금 부분(중소기업50%, 중견기업 30%)</li> </ul>  |
| 근로소득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%, 130만원 초과 분 30%공제</li> <li>한도:총급여액 3천3백이하(74만원), 7천만원 이하(66만원), 7천만원 초과(50만원)</li> </ul>   |
| 자녀세액공제<br>(손자녀 적용불가)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녀 1명(15만원), 자녀 2명(30만원), 자녀 3명 이상 : 30만원+2명 초과 1인당 30만원</li> <li>출생·입양 세액공제 : 첫째 3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 이상 70만원</li> <li>*자녀세액공제 대상 : 7세 이상의 자녀(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)</li> </ul>  |
| 연금계좌<br>(공제율 12%·15%)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금저축계좌 납입액(한도 400만원*) · 퇴직연금계좌 납입액(한도:연금저축액포함 700만원)</li> <li>*한도 차등적용:총급여액 1.2억원,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한도(300만원)</li> </ul>   |
| 보험료(공제율 12%·15%)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보장성보험료(저축성 제외) 12%(한도 100만원),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5%(한도 100만원)</li> <li>① 본인·65세 이상자·장애인·난임시술비(20%),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의료비</li> <li>② '㉠'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지출액 - 총급여액×3%(한도 700만원)</li> <li>*단 ㉠의 금액 &lt; 총급여액×3%인 경우 그 미달금액을 ㉠에서 차감 후 15%·20% 적용</li> <li>*산후조리원비용 :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(총급여 7천만원 이하)</li> </ul>   |
| 의료비<br>산식 : (㉠+㉡)×15·20%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본인:전액(대학원 포함) · 대학생 : 1명당 900만원한도(대학원제외)</li> <li>취학전아동·초·중·고생 : 1명당 300만원한도(체학학습비 30만원까지 포함)</li> <li>장애인재활교육 목적사회복지시설등에지급하는특수교육비(직계존속포함)</li> </ul>  |
| 교육비(공제율 15%)<br>(학자금대출상환액포함)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치자금기부금:10만원 이하(100/110), 10만원 초과 15%(3천만원 초과 25%)</li> <li>법정·정치기부금·우리사주조합기부금:15%(1천만원 초과 30%)</li> <li>한도:법정·정치자금(전액), 우리사주조합:근로소득-정치·법정×30%</li> <li>지정종교차(㉢×30%), 종교(㉣×10%+MIN(㉣×20%, 종교단체 기부액))</li> <li>* ㉢(근로소득금액-정치자금기부금-법정기부금-우리사주조합기부금)</li> </ul>   |
| 기부금<br>(공제율 100/110·15·25·30%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% 공제</li> <li>한도 : 근로소득 산출세액 × (국외근로소득금액 / 근로소득금액)</li> </ul>  |
| 납세조합공제<br>외국납부세액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총급여액 7천만원이하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)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의 주주지 주택 등을 임차하여 지급한 월세의 10%공제(한도 75만원)</li> <li>총급여액 5천5백만원이하(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)는 12% 적용</li> </ul>   |
| 월세액(공제율10·12%)                 |   |

표준세액공제 (13만원)

특별소득공제 · 특별세액공제 · 월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

= 결정세액

- 기납부세액

= 납부 또는 환급세액

※ 본 자료는 세법 상 공제 항목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공제 요건은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및 법령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(요약)

## [소득·세액 공제요건]

| 구분       | 공제요건   |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|--|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|
|          | 나이요건   | 소득요건<br>(100만원 이하)  | 동거 요건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     |  |   | 주민등록동거          | 일시퇴거 허용            |   |
| 기본공제     | 본인   | ×   | ×               | ×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     | 배우자  | ×   | ○               | ×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     | 직계존속   | 60세 이상<br>(99.12.31.이전)   | ○               | △<br>(주거형편상 별거 허용) |   |
|          | 직계비속, 동거입양자  | 20세 이하<br>(99.1.1.이후)   | ○               | ×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     |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배우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×   | ×               | ×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     | 형제자매   | 60세 이상<br>20세 이하  | ○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| ○ |
|          |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×   | ○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| ○ |
| 추가공제     | 위탁아동   | 18세 미만  | ○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     | 장애인  | ×   | ○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     | 경로우대   |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('49.12.31. 이전 생)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     | 부녀자(50만)<br>한부모(100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(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)<br>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(20세 이하)가 있는 자<br>*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 공제 우선 적용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
| 연금보험료 공제 |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
| 신용카드 등   | ×  | ○   |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|                    |   |
| 보장성보험료   | ○  | ○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
| 의료비      | ×  | ×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
| 교육비      | ×  | ○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
| 기부금      | ×  | ○   | 과세연도 지출한 비용을 공제 |                    |   |
| 표준세액공제   | 특별소득공제, 특별세액공제,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(13만원) 적용 |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

- ※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,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 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
- ※ 개인연금저축, 주택마련저축,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본인불입분만 공제 가능
- ※ 정치자금기부금,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
- ※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 공제 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[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38호 서식]을 발급받을 때에는 담당 의사를 경유하고 발행자란에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진단한 의사가 서명·날인하여야 함, 중증환자 판단은 의사소견 사항임

## [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]

| 구분      | 내용  |
|---------|---|
| 공제 대상자  | ① 근로소득자 본인<br>②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(연령제한 없음)<br>※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  |
| 공제율     | ① 신용카드(15%)<br>② 현금영수증, 직불·선불카드, 도서·공연비·박물관·미술관* 사용분 (30%)<br>*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<br>③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(40%)   |
| 공제금액 계산 |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* = 신용카드 + 전통시장사용분 + 대중교통이용분 + 현금영수증 + 직불카드 + 선불카드 + 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<br>* 중고차 구입액의 10% 포함<br>② 공제액 = [①의 사용액 × 15%(30%·40%)] - 총급여액의 25%   |
| 한도액     | MIN(총급여액 × 20%, 300만원*)<br>* 총급여액 7천만원 ~ 1.2억원 이하자(250만원), 1.2억원 초과자(200만원)<br>· 한도추가: 전통시장(100만원), 대중교통(100만원), 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(100만원)   |
| 공제 제외   | ①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,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<br>② 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, 연금보험료 및 각종보험료 또는 공제불입금<br>③ 초·중·고·대학·보육시설 등 수업료 및 공납금<br>④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공제 가능<br>⑤ 조세, 전기·수도·전화·가스료, TV시청료, 아파트관리비, 도로통행료<br>⑥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, 자동차대여사업의 리스료(대여료 포함)<br>⑦ 자동차 등 취득세·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(중고차는 가능)<br>⑧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,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|

## [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용금액 중복적용 여부]

| 구분               | 특별세액공제 항목          | 신용카드공제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  |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      | 신용카드공제 가능 |
|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|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      | 신용카드공제 불가 |
|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   |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| 신용카드공제 가능 |
| 그 외              |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      |           |
|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육구입비  |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      | 신용카드공제 가능 |
|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  |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      | 신용카드공제 불가 |

## [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]

| 구분    | 그 밖의 소득공제   | 소득공제(특별소득공제)  |   | 세액공제   |
|-------|---|---|---|--|
|       | 주택마련저축 납입액<br>조특법 82조②  | 주택임차차입금<br>원리금상환액<br>(소득세법52조④)   | 장기주택저당차입금<br>이자상환액<br>(소득세법52조⑤)  | 월세액 세액공제<br>조특법 95조②   |
| 공제 대상 | ·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서 불입한 청약저축 불입액  | ·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주(근로자)가<br>· 국민주택규모주택을<br>· 대출기관, 보훈청 또는 대부업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 임차 차입금 상환액  | · 무주택 및 1주택 세대주<br>· 기중시가 5억 이하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권 또는 주택도시보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액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중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타    |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가능  | 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 등을 받지 않은 경우,<br>①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(일용근로자 제외)이 계약한 주택에 대해<br>② 세대주 요건 외에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갖추고<br>③ 세대원 본인이 실제로 해당주택에 거주할 것                      |   |  |
| 요건    | · 청약저축 (240만원 이하 납입액)<br>· 주택청약종합저축 (240만원 이하 납입액)<br>· 폐지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(월 15만원 이하) | (차입금 요건)<br>1) 대출기관 차입 시 : 입주일, 전입일(갱신, 이주 포함) 중 빠른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<br>2) 거주자 차입 시 : 총급여 5천이하 근로자가 전입 등으로부터 1월 내에 2.1%이상의 이자율로 대부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 | ·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<br>·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일 것   | · 총급여 7천만원 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) 이하자<br>·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중시가 3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|
| 대상 주택 | (‘09.12.31.이전 기입자 경우)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시는 공제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국민주택규모<br>·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 | · 규모요건 삭제 ('14년부터)<br>· 취득 기중시가 5억 이하 ('19년 전차입 시 기중시가 4억 이하)<br>· ('13년 전차입 시 국민주택규모 + 기중시가 3억 이하)<br>· 오피스텔제외 | · 국민주택규모주택<br>· 주거용 오피스텔<br>· 주거용 고시원<br>· 부양가족명의의 임차주택 공제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공제 금액 | 납입액의 40%  | 원리금 상환액의 40%  | 이자상환액   | 월세액의 10(12)%   |
| 공제 한도 | 연 300만원 한도  |   |   | 75만원 (총급여 5,500만원 이하자 90만원)  |
| 증명 서류 | · 주택마련저축납입 증명서  | ·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<br>· 주민등록표등본<br>· (거주자차입 시)금 전소비대차계약서및계좌이체영수증, 무통장입금증 등증빙 할수 있는 서류  | ·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증명서<br>· 주민등록표등본<br>· 분양기액 확인서류 (공시가격 알리미)  | · 주민등록표등본<br>· 임대차계약서 사본<br>· 월세액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현금영수증, 계좌이체영수증, 무통장입금증 등)             |
| 주의 사항 | · 주택청약종합저축 (무주택확인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익년 2월 까지 제출)  | · 임대차계약서는 공제받는 세대주 및 세대원 명의로 작성 및 상환 필요<br>· 법인, 각종공제회차입금 제외  | · 무허가주택, 농기주택 포함<br>· 시·군·구·읍·면사무소 주택공제용 공동소유는 각자 1주택 소유로 볼 (상속 제외)   | · 등본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가 일치하는 기간에 지급한 월세액만 공제  |

※ 2019.12.31. 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

##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(www.hometax.go.kr)

- 서비스 오픈 일정 2020. 1. 15. 이후 제공 예정
  - 제공되는 소득·세액 공제 항목
    -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등
  -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
    - 공인인증서 이용 홈택스 로그인 → 조회/발급 → 연말정산 간소화
  - 부양가족의 공제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
    - ① 19세 미만 미성년자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 동의없이 조회 가능
    - ② 19세 이상 성인인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동의 신청\* 후 조회 가능
  - \* 제공동의 신청 방법
    -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(조회/발급→연말정산 간소화)
    - 홈택스 앱을 이용한 모바일 신청 (연말정산→연말정산 제공동의)
    - 세무서 방문 신청 (제공동의 신청서 제출)
- ※ 제공동의 시 부양가족 신분증·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필요